

#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한 고찰방안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n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김종복 (Kim, Jong-Bok)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Professor, Korea Aerospace University)

- I. 서 론
- II.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 III.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 원칙
- IV.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
- V. 결론

## I. 서 론

우주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은 우주공간에 인간이 상시 거주하면서 우주활동을 행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는 인간의 우주공간에서의 영구거주를 위한 우주정거장 계획으로 실현되었다. 최초의 우주정거장은 1971년에 구 소련이 발사한 Salyut 1호이다.

Salyut는 7호까지 발사되었는데 Salyut 7호는 1982년 4월에 발사되어 1984년까지 237일의 우주공간에서 인간체류기록을 세웠다. 미국은 1973년부터 Skylab 1~4호를 발사함으로서 우주정거장 경쟁에 참여하였다. 소련이 Mir우주정거장 발사를 포함하여 우주정거장 사업을 계속 추진한데 대하여 미국은 Space Shuttle 계획에 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에 우주정거장 계획은 초기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던 것이 1984년 1월 25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10년 이내에 인간의 영구거주를 위한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ISS')계획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서 본격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 계획이 추진되었다.

국제우주정거장 계획은 당초 계획소요예산이 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거대한 계획으로 이는 강대국 미국으로서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국제협력이 필요하여 우주개발에 있어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국가들을 참가국으로 하는 국제협력에 의한 사업으로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 일본 및 EU 제국에 대하여 동 계획에의 참가를 요청하였고, 1985년 4월 16일, 5월 9일, 6월 3일에 캐나다, 일본 그리고 EU제국의 동맹체인 ESA<sup>1)</sup>와 각각 일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 후 1988년 9월 29일 워싱턴에서 이들 국가 간 국제우주정거장에 관한 정부 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원 IGA')이 정식으로 체결되어 ISS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그러나 동 계획은 1993년 9월에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의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당초의 설계인 Freedom에서 규모가 축소된 Alpha로 변경되었고 우주공간에서 장기체류의 Know-how를 갖고 있는 러시아를 동 계획에 참여시킬 이점을 인식하고 러시아의 참가를 촉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러시아는 1993년 12월 17일 동 초청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1월 29일 러시아를 포함한 신 국제우주정거장 협정<sup>2)</sup>(이하 '신 IGA')과 일련의 양해각서가 참

---

1) European Space Agency의 약자로서 영국, 독일, 프랑스를 위시한 EU의 11개국이 참가하였다.

가국들 간에 체결되었다.

이와 같은 ISS계획은 ISS의 국제적 성격과 우주공간에서 장기간에 걸친 인간거주라는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많은 법적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상기 IGA와 MOU들은 예컨대 ISS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 문제와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문제에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같은 기존의 법 및 우주법체계로는 통합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ISS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를 신 IGA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ISS 상의 제반 법적문제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한다.

## II.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 1. 정의, 특징 및 기능

ISS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지만 인간이 상시 우주공간에 거주하면서 우주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주공간에 설치된 거대한 인공의 우주구축물로서 우주물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특징으로는 규모가 거대하고 준 영구적으로 우주공간에 설치되며 탑승원이 상주하는 저궤도상의 다목적 시설<sup>3)</sup>(multi-use facility in low-earth orbit)이라는 점이다.

ISS는 거대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건설과 운용에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sup>4)</sup>

2) 동 협정의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다.

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the Government of Japan,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ooperation on the Civil International Space Station.

3) 지상으로부터 460km상공의 우주공간에 설치된다.

4) 원 계획상의 ISS는 총중량 457ton, 길이 108m, 폭 80m로 소요예산 400억 달러 선으로 계획을 잡았으나 현재(2007년) 그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었고 예산도 1000억 달러를 넘 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공시기도 콜롬비아호 폭발사고 등으로 지연되어 현재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협력우주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그 특징이다.

이와 같은 ISS는 우주물체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즉 ① 과학적 탐구 및 응용과 신기술개발을 위한 우주 실험소, ② 지구와 우주를 관찰하는 고경사각의 궤도상의 상설관측소, ③ 화물과 운송기기의 도착과 처리 및 목적지로 이송하는 수송 중계점, ④ 화물과 운송기기의 보관, 수리 및 보급을 행하는 지원시설, ⑤ 대규모 구조물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조립공장, ⑥ 화물과 부품을 궤도상에 보관하는 저장시설, ⑦ 우주공간에서의 상업적 기회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⑧ 미래의 우주임무(영구적 달기지 건설, 화성유인우주선, 유인우주탐사 등) 수행을 위한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2. 구성

국제우주정거장은 각 참가주체가 제공하는 우주정거장 전용의 기반요소 (Infrastructure elements)과 비행요소(Flight elements) 및 ISS 전용의 지상요소 (Space Station-unique ground elements)로 구성된다.<sup>5)</sup> 이를 세분하면 ① 캐나다 정부는 CSA<sup>6)</sup>은 통하여 ISS의 기반요소로서 이동형 서비스시설(Mobile Servicing Center: MSC), 추가적 비행요소로서 특수목적 정밀 Manipulator, ② EU는 ESA를 통하여 이용요소로서 여압실험실, 보급 및 추가적 능력 비행요소, ③ 일본정부는 이용요소로서 일본실험동(Japanese Experiment Module: JEM)과 보급비행요소, ④ 러시아 정부는 RSA<sup>7)</sup>를 통하여 서비스동 및 타동을 포함한 ISS 기반요소, 실험동 및 탑재물의 장착장비, 보급 및 추가적 능력비행요소, ⑤ 미국 정부는 NASA<sup>8)</sup>은 통하여 거주동, 이용요소로서의 실험동과 탑재물의 장착장비, 기타 보급비행요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SS 전용의 지상요소제공은 참가국의 공통사항이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양해각서로 정하여진다. 이러한 제반요소로 구성되는 ISS는 법률상 별개의 우주물체의 복합체로 다루어지게 된다.

---

5) 신 IGA Annex 참조.

6) Canadian Space Agency를 말한다.

7) Russian Space Agency를 말한다.

8) 미국의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을 말한다.

### III.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기본원칙

#### 1. 파트너십(Partnership) 원칙

원 IGA 및 신 IGA를 관통하는 일관된 원칙은 "파트너십(Partnership: 협력관계)"이다. 신 IGA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참가국 간의 장기적인 국제협력의 틀을 진정한 파트너십(genuine partnership)을 기초로 하여 확립하는 것을 협정의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sup>

파트너십은 원래 정치학상의 개념으로서 리더십에 대한 정치적 원칙이나 이것은 국제관계법에 이전 정착된 법률상의 원칙이기도 하다.

파트너십의 개념에서는 우리 민법상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일본 민법상의 개념규정에 의할 때 파트너십은 「2 이상의 복수의 자가 영리목적으로 금전 또는 현물 출자에 의해 공동으로 사업을 행하는 계약관계」를 말한다고 라고 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파트너십의 본질은 첫째, 「2이상의 개인 간의 관계」 또는 「2이상의 개인 간의 결합」이다. 그러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둘째, 「영리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어떠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업의 공동소유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모든 파트너가 사업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지분에 따라 보유하고 사업의 관리에 참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참가주체 간에는 신뢰에 기초하여 공평하고 평등한 권리 인정과 동시에 소수 참가주체의 이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에 의한 IS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력기관(Cooperating Agency)를 설치할 것을 협정은 규정하고 있다.<sup>11)</sup> 관련하여 신 IGA 제1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서는 ISS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under the lead role of the United States)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ISS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9) 신 IGA Art 1.(1).

The object of this Agreement is to establish a long-term international cooperative framework among the Partners, on the basis of genuine partnership, for detailed design, development, operation and utilization of permanently inhabited civil international space station for peacefu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10) 龍澤邦彥 「宇宙法 システム」(丸善 プラネット 株式會社, 2000), 159頁.

11) 신 IGA Art. 4.

한 것으로서 파트너십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것을 아니라고 본다.

## 2. 평화적 이용원칙

신 IGA 제1조 제1항은 ISS의 개발 및 운용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을 위해서라고 평화적 이용원칙을 천명하고 있다.<sup>12)</sup> 이는 1967년 우주조약의 기본원칙을 ISS에도 적용한 것이다.

또한 동협정 제9조 제3항(b)는 기도된 요소의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을 요소를 제공한 참가주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상의 목적에서 결정권 요구가 배경이 된 것이다. ISS의 평화적 이용문제는 ISS의 계획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당초 ISS계획에 관심이 없었던 미국의 국방부가 ISS계획이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국방상의 목적에서 필요한 경우 ISS에의 접근을 확보하려고 시도한데서 비롯되었다. 원래의 IGA초안에서는 ISS의 국가안전보장상의 목적에서 이용에 관한 언급이 있었으나 제 5초안에서 동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의 배려는 부속서의 합의각서상에서 규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1989년 9월 19일부 교환공문 가운데 미국의 자국의 국가안전보장상의 목적에서의 자국의 요소를 이용하거나 우주정거장의 기반요소로부터 획득한 자원으로서 자국에 배분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이것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인가의 여부는 미국이 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신IGA에서는 EU, 미국 및 러시아 대표 간 교환공문이 행하여졌는데 미국은 원 IGA 상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에 대한 확인사항에 추가하여 자국의 요소 및 자국에 배분된 자원의 이용이 신 IGA에 기하여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미국이 행한다는 취지를 첨가하고 있다. EU 및 러시아 대표는 이러한 미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자기들의 권리도 확인하였다.

① EU에 있어서는 ESA 참가국이 제공하는 ISS의 요소의 이용에 대하여 각 참가국이 ESA 설립조약 제2조를 지침으로 한다. ESA 참가국이 신 IGA 제9조 제3항(b)에 의해 자기가 제공한 요소의 이용이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는 그 이용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② 러시아의 경우는 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여기서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평화」의 의미이다. 이에 대해서는 평화=비침략설, 평화=비군사설, 절충설로 설이 갈리나 신 IGA 참가국의 해석은 방어적 의미에서의 비침략설이 대세이다.

---

12) 위 각주9)의 관련조문 참조.

## IV.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

ISS는 우주공간에서의 「거주」 및 「작업」을 위한 우주물체라는 특성 상 종래 우주법 분야에서 예상치 못하였던 많은 새로운 법적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예컨대 ISS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관할권과 통제권 문제, 우주작업의 결과 얻어지는 발명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 문제, ISS의 비행요소 및 구성요소 등에 대한 소유권과 그 이전 등에 관한 문제, ISS계획을 추진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이다. 신 IGA는 이러한 법적문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협정상의 이들 법제도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 1. 등록제도

신 IGA는 ISS의 등록에 관하여 각 참가국별 개별등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ISS에 제공하는 각 구성요소는 각 참가주체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EU참가국은 ESA가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3)</sup> 이는 우주물체등록조약 제2조에 따른 것이다.<sup>14)</sup>

### 2. 관할권 제도

#### 가.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

ISS가 우주공간에 있는 물체이기는 하지만 ISS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탑승원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의 관할권 및 통제권이 행하여진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권은 국가 또는 국가 이외의 공법상 또는 집단으로서의 기관이 법률에 기해 규제할 수 있는 법행위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칭하며 통제권은 관할권의 구성요소로서 우주물체를 유도하거나 기술적 측면에서 탑승원의 행동을 감독하는 운용상의 권리를 말한다.

신 IGA는 관할권 및 통제권에 관해 준 영토적 관할권과 국적관할을 채택하고 있다. 즉, 신 IGA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우주조약 제8조 및 우주물체등록조약 제2조에 따라 각 참가국은 자국의 등록요소 및 자국민인 ISS상에서의 인원에 대하여 관할권

13) ESA의 활동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임.

14) 우주물체등록조약 제2조에서는 지구궤도상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된 우주물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각 발사국에게 등록의 확정을 UN사무총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및 통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이에 따라 비행요소의 등록국과 탑승원의 국적국이 관할권 및 통제권을 갖게 된다.

만약 어느 참가국의 국민인 탑승원이 타 참가국이 등록한 요소 상에 있는 경우 어느 참가국이 관할권 및 통제권을 갖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우주조약 제8조<sup>16)</sup> 및 탑승원의 실제의 거소의 관점에서 관할권의 행사에 관하여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는 요소의 등록국이 관할권 및 통제권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즉 준영토적 관할권과 인적 관할권이 충돌할 시는 지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토적 관할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관할권의 행사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 IGA는 비행요소 상에서 등록국이 행사하는 관할권은 지구상에서 영역국이 그 영역에 행사하는 관할권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즉 신 IGA 제5조 제2항 후단은 “관할권과 통제권의 행사는 동 협정과 MOU 그리고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소의 제약이 있다.<sup>17)</sup>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신 IGA에서 고려될 수 있는 특별규정으로는 동협정 제7조, 제9조, 제10조가 있다.

#### 나. 형사관할권

형사관할권에 관하여는 일반적 관할권과는 별도로 신 IGA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참가국은 어느 비행요소 상에서이건 자국민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1차적으로 용의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sup>18)</sup>

여기서 하나 유의할 것은 1988년의 원 IGA에서 규정하고 있던 유인 본체의 안전을 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

15) 신 IGA Art 5. (2) 전단.

16) Outer Space Treaty (1967), Art 8:

A State party to the Treaty on whose registry an object launched into outer space is carried shall retain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such object, and over any personnel thereof, while in outer space or on celestial body.....

17) 신 IGA Art 5. (2). 후단.

18) 신 IGA Art 22. (1).

다는 점이다. 참가국들 간에 소위 미국의 우월적·중첩적 관할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다.

동조 제2항은 궤도상의 위법행위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타의 참가국의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 타의 참가국의 비행요소 상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비행요소에 손해를 끼친 사건의 경우는 제1차적으로 용의자의 국적국이 형사관할권을 가지지만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참가국도 일정한 조건 하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9)</sup>

동조 제4항은 각 참가국은 위법행위의 처리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참가국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20)</sup> 동조 제5항은 승원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 IGA 제11조 제2항과 관계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각 참가국은 승원행동 규범의 개발에 협조하여야 하고 또한 승원의 제공이전에 동규범의 준수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일본, 미국·ESA, 미국·캐나다간 MOU 제11조 제8항 및 미국·러시아 MOU 제11조 제9항은 ISS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ISS 지휘관은 승무원의 안전, 질서 및 규율의 유지를 위해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NASA 규칙 1214.7 (STS (우주수송시스템)선장의 권한)<sup>21)</sup>과 러시아 우주법 제20조 제3항 (우주선 선장의 권한)<sup>22)</sup>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3. 소유권제도

---

19) 신 IGA Art 22. (2).

일정한 조건이란, 1) 용의자의 국적국인 참가국이 당해 권한 행사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2) 용의자의 국적국인 참가국이 소추를 위해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의뢰할 것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협의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합의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 이내에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 신 IGA Art 22. (4).

21) NASA 규칙 1214.7:

STS의 전 비행단계에서 선장은 ① 질서와 규율의 유지 강화, ② 모든 승무원의 안전 및 안녕, ③ STS 및 STS에 의해 운반되는 탑재물의 보호를 위해 자기의 재량에 의해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러시아 우주법 제20조 제3항:

유인 우주물체의 선장은 자기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비행계획의 이행, 승무원 및 비행에 참가하는 기타 요원의 안전과 우주물체와 우주물체 내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문제는 ISS 상에서 발명 등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ISS에서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활동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ISS에서 진행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ISS상에서 행해지는 창조적인 작업은 물론이고 지상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 활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신 IGA 는 동 협정 제21조에서 ISS상의 지적재산권 활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196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조약 제2조의 개념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3)</sup> EU참가국의 경우는 ESA로 등록된 요소 상에서 행해진 지적재산권 관련 활동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본다.

지적재산권의 관할권 문제는 준영토적 관할권을 채용하고 있다. 즉, ISS의 비행요소 상에서 행하여진 (지적재산권)활동은 비행요소의 등록국의 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4)</sup> 참가국이나 협력기관 또는 관계자에 의해 타의 참가주체의 비행요소 상에서 행해지는 활동에의 참가는 그 자체로는 관할권의 변경이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ISS의 비행요소 상에서 자국민 또는 거주자 이외의 자에 의해 행해진 발명에 대해서는 참가국은 타참가국이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분류되거나 보호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출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발명의 비밀에 관한 자국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① 특허출원을 최초로 행한 참가국이 그 비밀을 관리하거나 그 후의 출원을 제한하는 권리, ② 그에 따라 출원을 행한 참가국이 국제적인 의무에 기한 출원의 보급을 제한하는 권리를 해하는 것은 아니다.<sup>25)</sup>

ESA참가국 간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동조 제4항과 제5항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23) 신 IGA Art 21.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조약 제2조 규정의 지적재산권:

미술 및 학술의 저작물, 실연가의 실연, 레코드 및 방송, 인간 활동의 전 분야에 걸친 발명, 과학적 발견, 의상, 상표, 서비스마크 및 상호와 기타 상업상의 표시,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한 권리, 산업, 학술, 문예와 미술 분야에 있어서 지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한다.

24) 신 IGA Art 21. (2). 전단.

.....an activity occurring in or on a Space Station flight element shall be deemed to have occurred only in the territory of the Partner State of that element's registry.....

25) 신 IGA Art 21. (3).

있다. 이는 ESA가 복수의 참가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4항에 의하면 ESA에 등록된 요소 상에서 동일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동일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구주참가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이상의 구주참가국이 ESA의 등록요소상의 침해행위를 자국영역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서 2이상의 다른 지적재산권 소유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법원은 먼저 제기된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후에 제기된 소송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느 하나의 소송에 관한 판결이 실현된 경우는 동일한 침해행위에 기한 계류 중이거나 장래의 소송에 의한 손해의 회복은 금지된다.<sup>26)</sup>

제5항은 모든 구주참가국은 ESA의 등록요소 상에서 행해진 활동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실시를 위한 라이센스가 어느 구주참가국의 법률에 기해서 유효한 경우는 당해 라이센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라이센스의 조건이 준수되는 한에 있어서는 침해의 구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적이 다른 특허권자들 간의 동일한 발명에 대한 소송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동조 제6항은 「일시적 존재의 원칙」에 관한 규칙으로서 지구상의 지점과 참가국 또는

ESA에 등록된 비행요소 간의 이동 중의 물품이 타의 참가국의 영역에의 일시적 존재는 그 자체로는 그 참가국 있어서 특허권 침해절차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정의 전 체약국인 당사국인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5조 제3항<sup>28)</sup>과 미국 특허법<sup>29)</sup>에 기한 것이다.

신 IGA는 이 원칙을 채용하였기에 이동 중의 물품이 통과 중의 국가에 있어서 매각이나 타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이 적용되나,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권의 제조법에 의해 ISS상에서 제조한 물품을 당해 특허권에 기해 보호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 IGA는 이용자의 발명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는 각 참가국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다.

26) 신 IGA Art 21. (4).

27) 신 IGA Art 21. (5).

28) 「일시적 존재의 원칙에 관한 규정」, 즉 항공기 또는 차량과 그 부속물의 구조와 기능에 관해 당해 특허권의 특허 대상인 발명을 허용하는 공업소유권 보호동맹의 동맹국의 항공기 또는 차량이 타 동맹국에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29) 35 USC; Pub. L. 96-517, para. 272, 42USC, 2457(k).

#### **나.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으로는 각 참가국이 제공하는 ISS의 각 요소와 이용자 가 제공하는 장치 또는 물질의 소유권, ISS활동의 결과 생성된 물질과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각 참가국은 각자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ISS의 요소에 있어 자기가 제공하는 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sup>30)</sup> 다만 구주참가국은 ESA에 소유권을 위탁하고 있다.<sup>31)</sup>

그리고 각 참가국은 상호 간 소유관계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sup>32)</sup>

이러한 소유권은 각 참가국 간에는 이전이 가능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타 참가국 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sup>33)</sup> 비참가국이나 비참가국의 관할 하에 있는 민간단체의 이전은 타 참가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4)</sup>

이는 실제상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타 참가국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서 비참가국의 장래에 있어서 ISS계획에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참가국의 관할 하에 있는 민간단체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어 민간소유권 의 명확화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 다고 본다.

이용자가 제공하는 장치 또는 물질의 소유권은 그것이 단지 ISS상에 있다는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sup>35)</sup> 또한 ISS상에서 활동의 결과 생성된 물질이나 데이터의 소유권도 그것 자체로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는 ISS요소나 장치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IGA 이외의 개별합의에 의해 특별 취급된다.<sup>36)</sup>

#### **4. 손해배상책임제도**

---

30) 신 IGA Art 6. (1). 전단.

31) 신 IGA Art 6. (2).

32) 신 IGA Art 6. (1) 후단.

33) 신 IGA Art 6. (3).

34) 신 IGA Art 6. (4).

35) 신 IGA Art 6. (5).

36) 신 IGA Art 6. (6).

###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

신 IGA는 ISS를 통한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의 참가를 조장하는 목적에서 참가국 및 관련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의 상호포기제도(Cross-Waiver of Liability)를 채택하고 있다.<sup>37)</sup> 이는 NASA에서 이미 국제협력에 의한 우주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의 상호포기원칙을 협력협정에 삽입하는 것을 관행시 해오던 것을 구 IGA에 이어 신 IGA에서도 이 원칙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참가국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원칙에 동의하고 우주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여야 한다.<sup>38)</sup> 포기의 대상은 ① 타 참가국, ②타 참가국의 관련자, ③ 전 2자의 피고용자이다. 포기의 요건은 ① 손해를 일으킨 사람, 단체 또는 재산이 우주작업과 관계가 있을 것, ② 손해를 입은 사람, 단체 또는 재산이 우주작업과 관계로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sup>39)</sup> 손해배상의 청구권 상호포기는 그 법적기초에 관계없이 일체의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된다.<sup>40)</sup>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즉, ① 참가국과 그 관계자간 또는 관계자 상호간, ② 자연인의 상해 또는 사망에 있어 그 자연인 또는 유산관리인, 유족 또는 대위권자에 의한 청구, ③ 악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④ 지적재산권에 관한 청구의 경우이다.<sup>41)</sup> 상기 ①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절차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및 국내법에 따라 행해진다. ②는 미국의 주장이고, ③은 구주참가국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ISS 탑승원은 손해를 일으킨 자기의 행위에 있어서는 신체상의 상해 또는 사망이 포함된 경우 또는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포기의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동 원칙은 ISS 탑승원과 그 고용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④는 협정 제21조에 의해 규정되었기 때문에 삽입된 것이다. 이 원칙은 신 IGA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능력의 추가」, 즉 장래의 새로운 요소의 추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sup>42)</sup>

###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37) 신 IGA Art 16. (1).

38) 신 IGA Art 16. (3) (a) 전단.

39) 신 IGA Art 16. (3) (a) 후단.

40) 신 IGA Art 16. (3) (f).

41) 신 IGA Art 16. (3) (d).

42) 신 IGA Art 14. (2) 전단.

ISS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국제책임이다. 이러한 국제책임의 주체는 각국의 협력기관을 포함한 참가국과 다음의 관계자이다. ① 참가국의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 ② 참가국의 이용자 및 고객, ③ 참가국의 이용자 및 고객의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이다.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는 모든 종류의 공급자를 포함한다.<sup>43)</sup>

국제책임의 대상은 「보호되는 우주작업(Protected Space Operation)」으로 표현되고 있다.<sup>44)</sup> 신 IGA 및 MOU와 시행규칙은 모든 발사체, ISS, 탑재물에 관한 일체의 활동과 공간적으로는 지구상, 우주공간, 지구와 우주공간 간의 이동 중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ISS 관련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탑재물 상에서 행해진 생산물 또는 제조의 개발 계속을 위한 지구귀한 이후의 지상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은 제외된다.<sup>45)</sup>

손해는 ① 신체상의 상해, 건강상해, 사망, ② 재산의 손상, 멸실, 이용가치의 상실, ③ 수입 또는 수익의 상실, ④ 직·간접 및 결과적 손해까지 포함된다.<sup>46)</sup> 신체적·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결과적 손해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우주손해책임조약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하겠다.

#### 다. 제3자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참가국 및 ESA가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에 따라 국제책임을 진다.<sup>47)</sup> ESA는 각 가맹국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에 기해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진 경우는 각 참가국은 책임의 분담 및 방어에 관한 즉각적인 협의를 하여야 한다.<sup>48)</sup>

신 IGA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물체의 발사 및 회수에 관해서는 연대책임의 분담에 관한 별도의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sup>49)</sup>

---

43) 신 IGA Art 16. (2) (a) (b).

44) 신 IGA Art 16. (2) (f) 전단.

45) 신 IGA Art 16. (2) (f) 후단.

46) 신 IGA Art 16. (2) (c).

47) 신 IGA Art 17. (1).

48) 신 IGA Art 17. (2)

49) 신 IGA Art 17. (3).

## 5. 분쟁해결제도

신 IGA는 분쟁해결방법으로 협력기관(Cooperating Agency)을 통한 협의(consultation)를 분쟁해결의 중심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IGA의 교섭과정에 있어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가 논의되었지만 미국은 ISS계획의 기술적 특성상 분쟁문제는 중재에 적합지 않고 의무적 중재절차는 미국의 국내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를 거부하고 협의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구주참가국은 의무적 중재조항이 제3자의 개입을 피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조정과 중개를 거친 후 중재에 의뢰할 것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는 협의제도가 채택되었지만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신 IGA상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각 참가주체는 ISS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라도 상호 간에 협의가 가능하고 MOU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협력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0)</sup>

또한 어떠한 참가국도 ISS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타 참가국에 대해 정부 간 레벨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참가국은 협의가 모든 참가국의 고려사항이라는 취지를 미국에 통보하고 미국은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참가국이 참석하는 다수국 간 협의를 소집하여야 한다.<sup>51)</sup>

어느 참가국이 비행요소의 심각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타 참가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타 참가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사안을 위 절차에 따라 협의에 회부할 수 있다.<sup>52)</sup>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관계참가국이 조정, 중개 또는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sup>53)</sup>

---

50) 신 IGA Art 23. (1).

51) 신 IGA Art 23. (2).

52) 신 IGA Art 23. (3).

53) 신 IGA Art 23. (4).

## V. 결론

이상에서 신 IG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ISS와 관련한 법적 시안들을 살펴보았다.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협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고 있는 기본정신은 ‘파트너십’이다. ISS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 파트너십 존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ISS계획은 다수의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협력사업이어서 참가국간의 권한의 배분문제와 책임의 분담 문제 등에서 마찰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각 참가국이 파트너십의 정신을 잊고 자기의 주장만을 관찰하고자 할 때 ISS계획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 있어서 신 IGA에 있어서 법률상 불명확한 부분은 앞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등록대상으로서의 우주물체와 구성요소의 구별, 관할권 및 통제권의 대상의 명확화, 손해액 분담, 보험사의 대위권, 책임의 기간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문제, 우주물체의 발명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새로운 법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상영역이 우주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우주활동이라는 점에서 지상에 적용되는 법과 다를 수 있고 우주개발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법제도가 소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유동적인 아직도 형성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분쟁예방차원과 파트너십 존중의 입장에서 법적 명확화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도 내년에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우리 우주인이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ISS에 가서 우주에서의 각종 실험 등 우주활동을 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한 철저한 법제도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 우주법 제20조 제5항은 ‘러시아 연방에서 비행훈련과정을 받은 자 또는 러시아의 유인 물체에 탑승하여 비행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러시아 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관할권에 복종할 것인가 하는 관할권 문제와 우주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 문제, 책임문제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예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신 IGA의 법적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참가국과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금번 계약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조항이나 조건이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의 우주개발 예컨대 달기지 건설과 같은 우주개발사업은 국제

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번의 신 IGA는 그 Model Law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비록 본고에서는 신 IGA상의 법제도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 각 부분별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 기여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초 록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 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①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② 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①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②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① 등록제도, ②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③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④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⑤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 국제우주정거장, 국제우주정거장협정, 파트너십 원칙, 평화적 이용 원칙, 등록제도, 관할권, 지적재산권,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 제도, 분쟁해결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about the legal system of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IGA') which was signed on Jan 29,1998.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main parts ; 1) a review of ISS, 2) the principal rules of IGA, 3) the legal system of IGA.

First, the paper draws an outline of ISS by dealing with ①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ISS, ② the composition of ISS.

Second, the paper explains the principal rules of IGA which include ① the rule of 'Partnership' and ② the rule of 'Peaceful Purpose'.

Third, the legal system of IGA is studied by looking at five different aspects: ① the registration system, ② a general jurisdiction, criminal jurisdiction and a control of jurisdiction, ③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ther rights beside intellectual property, ④ cross-waiver of liability and several elements in compensation of damages, ⑤ the dispute resolution.

IGA contains new contents and applications of legal system which was not included in the former space law. Therefore IGA will work as a model law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space development. It is important for us to study the matter of ISS, because disputes on the ISS are left solely to contracting parties although IGA will regulate overall situations.

The renewed IGA is even more important because all the space development is expected to take place on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is. On the basis of this paper, all the important parts of IGA is expected to be further studied so that the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system of space development in Korea.

Key word: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GA, Partnership, Peaceful Purpose, Jurisdiction, Cross-waiver of Liability